
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 규약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5. 12. 8

나. 제 안 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5. 12. 19

라. 상정일자 : 1995. 12. 20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자치단체 명칭변경 및 행정구역 개편

• 지방자치법 개정(94. 12. 20) : 제2조1항 및 제3조2항

— 직할시 → 광역시

— 경기도 강화군 → 인천광역시 강화군

• 인천광역시 북구 구제개편(95. 3. 1)

— 인천광역시 북구 → 인천광역시 부평구, 계양구

○ 인천광역시 북구에서 분구된 계양구로부터 행정협의회 가입요청(95. 8. 29)

나. 주요골자

○ 기존 구성자치단체중 일부명칭 변경 [제3조(구성)]

• 인천직할시 북구 → 인천광역시 부평구

• 경기도 강화군 → 인천광역시 강화군

○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구성자치단체 확대

• 인천광역시 계양구 신설

○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구성위원 조정 [제4조(조직)]

• 회장 1인과 위원 5명 → 회장 1인과 위원 6명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참가범위 제한은 없습니까?	○ 없습니다.
○ 임의 가입 탈퇴가 가능합니까?	○ 제약이 없습니다.
○ 지금까지 회의개회는 몇회죠?	○ 3회입니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8. 체계적 심사내용

○ 없음

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

의원번호	47
의결년월일	95.12.30 (제 4 차)

제출년월일 : 199 .12.5

제 출 자 : 부천시장

1. 개정사유

가. 자치단체 명칭변경 및 행정구역 개편

○ 지방자치법 개정(94. 12. 20) : 제2조1항 및 제3조2항

- 직할시 → 광역시
- 경기도 강화군 → 인천광역시 강화군

○ 인천광역시 북구 구제개편(95. 3. 1)

- 인천광역시 북구 → 인천광역시 부평구, 계양구

나. 인천광역시 북구에서 분구된 계양구로부터 행정협의회 가입요청(95. 8. 29)

2. 주요골자

가. 기존 구성자치단체중 일부명칭변경 [제3조(구성)]

- 인천직할시 북구 → 인천광역시 부평구
- 경기도 강화군 → 인천광역시 강화군

나.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구성자치단체 확대

- 인천광역시 계양구 신설

다.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구성위원 조정[제4조(조직)]

○ 회장1인과 위원5명 → 회장 1인과 위원 6명

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(안)

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

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구성) 협의회의 구성은 부천시, 광명시, 시흥시, 김포군, 인천광역시의 부평구, 계양구 및 강화군으로 한다.

제4조(조직)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.

부 칙

이 규약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1조 내지 제2조(생략)	(현행과 같음)
제3조(구성) 협의회의 구성은 부천시, 광명시, 시흥시, 김포군, 강화군, 인천직할시의 북구로 한다.	제3조(구성) 협의회의 구성은 부천시, 광명시, 시흥시, 김포군 인천광역시의 부평구, 계양구 및 강화군으로 한다.
제4조(조직) ①협의회는 회장 1인과 위원5명으로 구성한다	제4조(조직) ① 협의회는 회장1인과 위원6명으로 구성한다.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5조 내지 18조 (생략)	(현행과 같음)

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

(개 정 안)

부 천 시

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(안)

제 1 조(목적)

부천시를 중심으로한 인근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내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(이하“ 협의회” 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한다.

제 2 조(사무소의 위치)

협의회의 사무소는 부천시에 둔다.

제 3 조(구성)

협의회의 구성은 부천시, 광명시, 시흥시, 김포군, 인천광역시의 부평구, 계양구 및 강화군으로 한다.

제 4 조(조직) ① 협의회는 회장1인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.

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③ 회장은 부천시장으로 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부천시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위원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되,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부시장, 부군수, 부구청장이 대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.

제 5 조(기능) ① 협의회는 관계지방 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.

1. 인접지역과 관련되는 도시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도시계획 구역내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
3.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
4. 인접지역과 관련되는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등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
5. 행정구역 경계관리 등 사무의 협의, 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
6. 자원의 개발 이용, 조사에 관한 사항
7. 환경오염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
8. 인접지역간 연결 버스노선의 신설, 연장 등 교통망 확장에 관한 사항
9. 주요 연결도로 등 도로망의 신설, 변경, 확장, 포장 등에 관한 사항
10. 상·하수도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
11. 개발제한 구역내에서의 공동감시, 단속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
12. 자원 및 생산물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
13.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자료, 정보, 기술의 교환

4. 기타 광역개발 및 광역 행정 수행상 필요한 사항

15.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에 협의회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 각호의 사항중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계획 확정 이전에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협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제 6 조(협의방법)①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받아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.

② 특히 시·도를 달리하는 관련 자치단체간 협의안건중 예산 또는 기타 정책결정과 관련되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반드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③ 안건의 협의는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 7 조(회의)① 협의회회의 회의는 정기회의,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년2회로 하되 3~4월과 9~10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.

③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회장은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.

⑤ 회장은 협의회 개최후 14일 이내에 협의회 개최결과를 안전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⑥ 회의 결과가 통보된 때에는 안전관련 협의회 위원은 소관 상급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8 조(사무처리)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.

② 간사는 부천시 기획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부천시 기획계장으로 한다.

제 9 조(회의록 작성)

협의회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, 관리하여야 한다.

제 10 조(자료제출 요구등)

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, 의견의 개진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 11 조(미합의 사항의 조정요청)

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이상 협의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, 도지사에게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.

제 12 조(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)

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시, 도지사가 조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제 13 조(자문위원)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 기관의 장,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.

③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 14 조(실무협의회)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전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.

② 실무협의회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기획담당관 또는 이에 준하는 광역행정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정안전에 따라 국, 과장과 지역주민 대표 등 이해관계인이 배석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부천시 기획실장이 되며 간사 및 서기는 제8조 제1항, 제2항을 준용한다.

④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여야 한다.

⑤ 실무위원장은 협의 안전의 실무 검토 의견서를 본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고 본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 하여야 한다.

제 15 조(경비부담)

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분담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 16 조(회계)

협의회의 경리 상황은 매년 첫번째 회의시 간사가 보고하며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17 조(규약개정)

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.

제 18 조(보칙)

협의회가 운영상 필요한 기타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약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